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52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이수진 · 최혁진 · 송옥주
남인순 · 민병덕 · 전진숙
김정호 · 백혜련 · 이언주
안도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 약사, 변호사, 성직자 등 전문자격에 기반하여 의무 · 법무 ·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도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년 6개월까지 단축된 데 반해, 이들 의무 · 법무 · 군종장교의 실질 복무기간은 임관 전 훈련 포함 약 38개월로 현역병의 2배를 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의무장교 대신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신규 군의관은 2025년 692명에서 2026년 304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029년에는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인원이 77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수의장교는 2025년 선발 인원이 없었고, 군법무관도 필요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이에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의무·법무·군종장교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9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육군3사관학교”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장교(이하 “의무·법무·군종장교”라 한다)는 2년으로 하고, 육군3사관학교”로, “6년으로 하고”를 “6년으로 하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법무·군종장교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법무·군종장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의무·법무·군종장교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각 부의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

이 임용시기별 단축기간을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	4. ----- ----- . ---- 제 <u>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가</u> <u>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u> <u>장교(이하 “의무·법무·군종</u> <u>장교”라 한다)는 2년으로 하</u> <u>고, 육군3사관학교</u> ----- ----- ----- -- <u>6년으로 하며</u> ----- ----- ----- ----- ----- -----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 7.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
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
은 교육기간을 산입한다.